

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

개정 2025. 02. 01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내규는 상지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

제3조(과목개설 및 학점인정)

-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하고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.
- ②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 및 담당교수 배정은 사회봉사단에서 주관하고 FIND 칼리지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이수구분)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한다.

제5조(이수대상)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대상은 학년 및 학과(전공)에 제한 없이 전체 재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.

제6조(이수기준)

-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으로 구성된 이론교육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②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①항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의 이론교육 2시간을 수강한 자로서,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다수의 기관에서 봉사한 시간을 합산하여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④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최소 4일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1일 최대 8시간 이하에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⑤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사회봉사활동 계획서,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봉사활동 인증 서류를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담당교수)

- ① 담당교수는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의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·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② 담당교수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에 대한 지도를 위해 봉사기관의 담당자와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담당교수는 봉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봉사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봉사기관의 대표 및 담당자와 협의하며, 필요 시 이를 사회봉사단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강신청)

-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한 내에만 허용하고,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수강신청을 불허한다.
- ② 사회봉사 취득(신청)학점은 「학칙시행세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한도 학점에 포함된다.

제9조(봉사기관 선정)

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은 대학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종합봉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봉사기관 중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(VMS)
2. 1365 자원봉사포털
3. 청소년 자원봉사 Dovol(두볼)

제10조(봉사활동 인정범위)

- ① 제9조(봉사기관 선정)에 따른 봉사기관에서의 활동을 인정한다.
- ② 헌혈 참여시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정(학기당 1회)하며 학기 내 최대 1회만을 인정한다.
- ③ 기타 사회봉사단 VMS인증센터 봉사 프로그램 활동에 대하여 인정한다.

제11조(성적평가)

-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‘P’ (Pass) 또는 ‘N’ (Non-pass)으로 표기한다.
- ②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 학기 및 전체 평균평점 산출에서 제외한다.
- ③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‘N’ (Non-pass)으로 처리한다.
 1. 교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2시간을 미이수한 경우
 2. 사회봉사활동 계획서,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봉사활동 인증 서류를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 3. 이 내규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생이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 직전 학기의 방학기간(하계·동계) 중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, 담당교수는 이를 사회봉사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에 포함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1. 수강신청 학기에 실시하는 교내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2시간 이수
 2. 수강신청 학기의 7주차까지 제6조(이수기준)에 명시된 사회봉사활동 계획서,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봉사활동 인증 서류 등의 제출

제12조(인증서 발급) ①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한다.

제13조(보칙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학칙」 및 「학칙시행세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2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